

2026년 「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」 모집 공고

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, 문화여가, 자기계발 등 복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「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」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. 3. 13.

경 상 북 도 지 사

I 「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」 이란

-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, 문화여가, 자기계발 등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 -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(생애 1회)

II 신청대상

1. 신청자격

- ① (거주) 경상북도 내 거주(사업공고일 기준)
- ② (연령) 19세 이상 39세 이하(1986. 1. 1. ~ 2007. 12. 31.)
- ③ (소득)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30%(3,333,509원) 이하
 - ※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(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)으로 판단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- ④ (근무)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(사업신청일 기준)

2. 제외대상

- ① 사행산업, 주점업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근무 중인 자
- ②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복지사업 수혜(예정)중인 자
- ③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
 - 청년애꿈 수당(취업성공수당, 근속장려수당)
 -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
- ④ 선정 이후 이직(퇴사), 타시도 주소지 이전 등 자격유지 조건에 변동이 있는 자

⑤ 경북 청년 행복카드 既 선정자(생애 1회 지원)

⑥ 타 재정 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

⑦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
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○ 해외파견자,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○ 국가근로장학생(한국장학재단)
- 현역 및 보충역(군인, 사회복지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
- 주 소정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인 자

⑧ 아래 제외(제한)기업에 근무 중인 자

〈 제외(제한) 기업 〉

1) 소비·향락업

-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 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’
- 「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」 제2조
-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(복권발행업, 현상업, 회전판 돌리기업, 추첨업, 경품업 등)

2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-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: 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
-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 : 「민법」·「특별법」에 따른 종교법인, 의료법인, 학교법인, 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, 비영리특별법인 등
-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‘외국 법인’

3) 3개월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
4)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
-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

5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 등

6)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
⑨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

III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1.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6. 3. 23. ~ 2026. 4. 15. 까지(선착순)

○ 신청방법 : 경북일자리종합센터(gbwork.kr)온라인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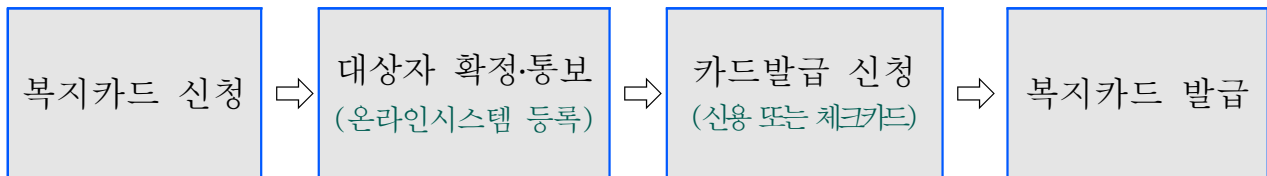
※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
2. 제출서류 ※신청일 이후 발급 서류(③~⑥)만 유효하게 인정

- ① 사업신청서(온라인 서식) 1부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
- ③ 주민등록초본 1부(1·2회차 지원시 제출)
-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
-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직장가입자, 전체이력) 1부(1·2회차 지원시 제출)
-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)
- 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
- ⑧ 근로계약서 1부

IV 대상자 선정

1. 대상자 선정 절차



2. 심사 및 선정

○ 심사시기 :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

○ 심사방법

① 1차 지원(최초 50만원)

－ 서류 제출 순으로 실시, 서류 적격여부 판단 후 대상자 확정

※ 만 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

② 2차 지원(최초 선정 3개월 이후 50만원)

－ 1차 지원자에 한해 증빙자료(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제출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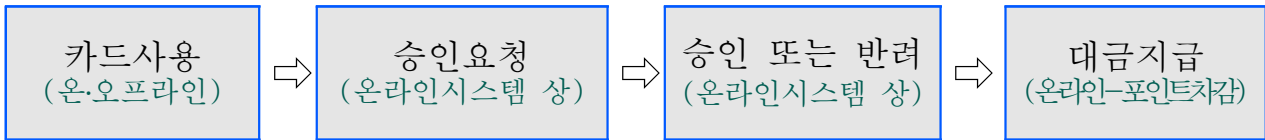
③ 후보자 대체 선정 시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

※ 선정일 기준 근무, 주소, 임금 등 확인

V

행복카드 사용 및 대금 지급

1. 사용 및 지급 절차



2. 행복카드 발급

- 발급시기 :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
- 발 급 처 : 도내 제휴은행(농협은행, iM뱅크) 전 지점
- 신청방법 : 청년근로자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신청
- 카드유형 : 신용카드, 체크카드 중 택 1

3. 행복카드 사용 및 제한(온·오프라인 동일)

- 사용분야 : 건강관리, 여가활용, 자기계발, 가족친화 등

자율항목		주 요 내 용
대분류	소분류(7개항목)	
건강관리	건강검진	○ 종합건강검진 ※ 의료비(진료, 약제구입 등) 불가 ○ 시력 보정용 안경, 콘택트렌즈 구입 ○ 보청기, 건강보조식품 구입 ○ 안마기 등 의료기 구입
	운동시설 이용	○ 헬스장, 볼링장, 탁구장 등
여가활용 (문화레저)	레포츠, 여행	○ 국내·외 여행비용(숙박비, 교통비, 유류비) ○ 스포츠 참여 및 용품 구입 ○ 자전거, 네비게이션, 카메라 구입 ○ 차량정비, 블랙박스, 하이패스
	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	○ 연극, 영화, 전시회, 공연 관람 ○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
자기계발	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	○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○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
	도서구입 등	○ 각종 도서, 음반 등 구입
가족친화	가정 친화 출산 장려	○ 출산용품, 육아용품(유아도서, 장난감 등) 구입 ○ 가족사진촬영, 테마파크 이용

○ 제한분야

- 1) 사행성,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, 불건전한 항목
예) 복권, 마권, 상품권, 주유권, 노래방, 유흥비 등
- 2)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
- 3)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
예) 가구, 가전제품, 식재료, 생활용품 등 구입
- 4)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
예) 공공요금, 세금, 출퇴근 교통비, 각종 보험료 등

4. 차감신청

○ 신청대상 : 행복카드 결제건 중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사용내역

○ 신청방법

- 1) 복지몰(<https://gbjob.ezweel.com>)내 구매 시
 - 복지몰에 등록된 복지항목 물품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 가능
- 2) 행복카드로 온·오프라인 구매 시
 - 행복카드로 결제 후 복지몰(온라인 시스템)에서 차감신청
- 3) 소명신청
 - 사용내역만으로 복지항목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소명신청을 통해 포인트 차감가능

5. 복지카드 이용대금 지급

- 지급대상 : 온·오프라인 행복카드 사용내역 중 차감 승인한 지출 건
- 지급시기 : 전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 15일까지 지급
- 지급방법 : 근로자별 행복카드 결제계좌로 현금 입금

VI

지원중단 및 부정수급자 조치

1. 지원중단 시기 및 조치

구 분	사 유	지원종료 (중단) 시기
자격요건 변 동	사업 참여 중 이직이나 퇴직, 주소지 이전 등 자격요건이 변동된 경우 ※ 단, 임금 상승은 제외	사실인지(신고) 이후 (2차 심사 시 확인)
부적격자 확 인	참여대상자가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	사실인지(신고) 이후
불 성 실 참 여 자	지원대상자가 수탁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되거나 회신을 거절한 경우	지원 종료(중단) 결정 이후
기 타	기타 수탁기관에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	지원 종료(중단) 결정 이후

2. 부정수급자 조치

- 참여 청년근로자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지급중지, 既 지원금
반환 조치 및 사업참여 제한
- 부정수급의 유형
 - 1)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(이직, 퇴직사실 숨김, 타인명의 도용,
증빙서류 변조 등)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
 - 2) 행복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물품을 반복·지속적으로 재판매한 경우

VII

신청자 유의사항

-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, 제출서류 미비,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-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여 주시고,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,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묻는 질문(FAQ)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VIII

사업관련 문의처

-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담당 ☎054-470-8586

[붙임1]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(온라인 입력)

신청자 정보 (필수기재)	성 명	
	생년월일	(세)
	주 소 (주민등록 기준)	
	연락처	
	E-mail	
취업처 정보 (필수기재)	회사명	
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업 종	
	회사 주소 (연락처)	
	입사일자	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(필수)

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지원금 지원 대상여부 심사,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, 구직자 채용·취업 관리
-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이메일, 연락처, 건강보험,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

동의함 ☐ 동의안함 ☐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(필수)

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경상북도, 지방자치단체,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, 이지웰, 지역 금융기관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 : 지원금 지급 시 제공되는 온라인ID 발급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심사
-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신청자 정보 등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운영 기간

동의함 ☐ 동의안함 ☐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(필수)

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, 지원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의함 ☐ 동의안함 ☐

4. SNS 연동,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(선택)

- 경상북도 정책(취업 및 창업등)과 관련하여 SNS 연동, SMS 수신 및 유선 정보 안내 등의
동의함 □ 동의안함 □

※ 주의사항 : 귀하는 상기 1~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일 일 일

작성자 :

(서명)